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발의자: 유승용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‘쓰담 달리기’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생활형 환경운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- 쓰담 달리기 행사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‘플로깅(plogging)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,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생활운동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, 국내에는 2018년 이후 확산된 것으로 파악됨.
- 한편, 국립국어원은 ‘플로깅(plogging)’과 ‘줍깅(jupging)’의 순화어로 ‘쓰담 달리기’를 선정하였으며, 현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있음.
- 쓰담 달리기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동시에 거리 환경개선, 환경보호 인식 제고 등 복합적 효과를 가져오는 활동으로,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서 의미가 큼.
- 이에 본 조례안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구민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조례안의 골자인 ‘쓰담 달리기’의 개념을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, 행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안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, 목표 설정·프로그램 개발·재원 조달 등 주요 추진사항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.
- 안 제5조(사업의 추진 및 지원)는 구청장이 법인·단체 지원,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- 안 제6조(쓰담 달리기 행사)는 구청장이 직접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민간기관·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환경보전 인식 제고와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.

-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, 법인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.
- 안 제8조(포상)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·기관·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,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.

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걷기·뛰기와 같은 신체활동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환경정화활동인 쓰담 달리기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,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환경보호 의식을 함께 고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 -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6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.

발 의 자 : 유승용 · 전승관 · 양송이 · 김지연 의원 (4인)

1. 제안이유

‘쓰담 달리기’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생활형 환경운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- 마. 쓰담 달리기 행사(안 제6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연환경보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쓰담 달리기”란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

1.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
3.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
4.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의 추진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
2. 홍보 · 안내 및 교육 실시

3. 그 밖에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쓰담 달리기 행사)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관, 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